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법률홈닥터제도안내 ●●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법률홈닥터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2.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3.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4.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10:00~17:00

